

대신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신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dit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9.03.3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05.0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1. .

2. ,

3. ,

4. .

5. 가

6. , , , 가
) 가 (가

7. ,

8. 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대신 지구은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7117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1) ()

2) () () ,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71175)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71175
A	71171
C1	71172
C2	91410
C3	91412
C4	91413
C-W	91414
C-F	9384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7.04	최초설정
2008.01.23	운용전문인력변경
2008.03.21	약관변경(투자대상에 공모주 추가)
2009.02.19	운용전문인력변경
2009.03.25	약관변경(클래스 C-F신설)
2009.04.10	운용전문인력변경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대신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우.150-884) ☎ 02-769-3246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펀드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 운용지시, 조사분석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해외위탁운용사명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설립일	1995년 8월 8일
회사주소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Limited AG Josefstrasse 218, CH-8005 Zurich, Switzerland 전화번호:(41)-44-653-1010 팩스:(41)-44-653-108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09.4.10 현재)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나상혁	1971	부장	20개	537억원	1996년 대신증권(주) 입사 1997년 대신증권(주) 국제조사팀 1998년 대신증권(주) 런던현지법인 2002년 대신투신운용(주) 주식운용본부 2009년 대신투신운용(주) 글로벌사업본부

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규훈	2007.07.04 ~ 2008.01.22
신민수	2008.01.23 ~ 2009.02.18
허승구	2009.02.19 ~ 2009.04.09
나상혁	2009.04.10 ~ 현재

1) 2009.04.10. 3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Mr. Thiemo Lang, PhD(2008.12.31 기준)
운용자산규모	운용규모 (단위 : USD) - SAM Sustainable Climate Fund : 81 백만 달러 - SAM Smart Energy Fund : 231 백만 달러
과거 운용경력	- Development engineer, Siem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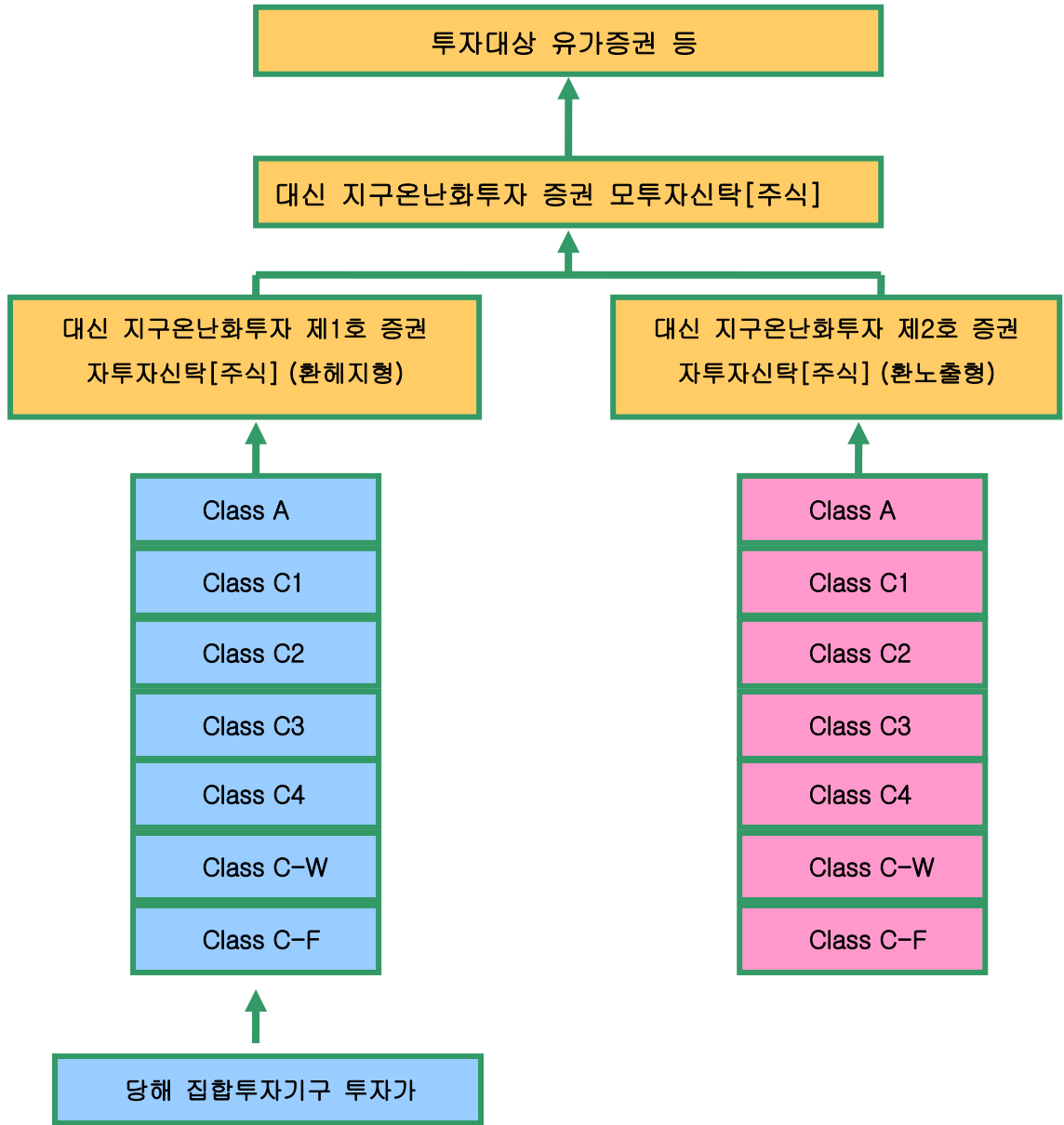
	- Technology Analyst, Portfolio Manager, HypoVereinsbank - Senior Portfolio Manager,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을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변화에 맞춰 분산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증대를 추구하는 해외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환헤지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손익변동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 MSCI World(Euro) Index X 90% + Call Rate X 1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자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모 투자신탁수익증권	100%이하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장내·장외통화관련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기준)	-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환위험 회피목적으로만 투자 - 위험평가액 : 투자신탁의 최초 설립일로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채권	-	-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파생상품 거래에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잔존만기 1년이내의 채권. 단,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한함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		- 만기 1년 이내의 금융기관 예치
양도성예금증서		
기타	-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제18조 제2호의 규정(파생상품)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규약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외국주식	60%이상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지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구온난화 완화섹터(하부산업 : 저탄소에너지기술산업,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산업, 저탄소교통시스템산업, 토지이용 및 흡수원분야의 탄소배출감축산업)·지구온

		<p>난화 적응섹터(하부산업 : 물기반시설산업, 해안기반시설산업, 지식 및 조기경보시스템 산업, 건축기반시설산업)·지구온난화 대응섹터(하부산업 : 재난구조산업, 재난복구산업)에 속하는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외국 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p>
채권	40%이하	<p>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u>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u>,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화증권</p>
어음	40%이하	<p>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u>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u>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화증권</p>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p>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화증권</p>
수익증권	5%이하	<p>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법제110조의 수익증권, 법제189조의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p>
외국수익증권	20%이하	<p>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인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수익증권</p>
ETF	30%이하	<p>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p>
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기준)	<p>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국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위험평가액기준 : 투자신탁의 최초 설립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p>
금리스왵거래	100%이하	<p>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p>
투자증권의대여	50%이하	<p>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p>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이하	<p>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p>
투자증권의 차입	20%이하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p>
단기대출	-	<p>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p>
금융기관 예치	-	<p>만기 1년 이내인 상품</p>
양도성예금증서	-	
기타	-	<p>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투자비율 적용예외		<p>- 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파생상품)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

구분	내 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신용평가등급 AA(-) 미만인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p>✓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당해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 평가액이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용평가등급 AA(-) 미만인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지분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 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나머지 재산은 국내 단기대출 및 어음 등에 투자합니다.
- (2) 모집합투자기구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향후 가장 유망하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전세계 기업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며, 지구온난화관련산업가운데 지구온난화완화, 지구온난화적응, 지구온난화대응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 (3) 지구온난화산업과 관련되고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외국기업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등의 금리, 주가,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자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4)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자산은 지속가능성투자부문의 선도적 전문운용사인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에 위탁운영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위탁운용사인 SAM사와의 정기적인 전화회의를 통하여 과거 운용성과 및 향후 운용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 후 시장의 변동에 대처합니다.
- (6)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나. 환위험 관리

- (1)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의 외화표시자산의 원화대비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자투자신탁 차원에서 통화관련장내·외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합니다(목표헤지비율: 90%±10%). 그러나 펀드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헤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헷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 (2)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주로 미국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모 투자신탁의 자본 소득 및 이자 소득을 통한 수익을 얻는 모자형 구조입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 전략]

참고 1. 섹터별 투자유니버스

① 지구온난화완화

지구온난화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지구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향상 등에 기여하는 투자섹터

하부산업

- 저탄소에너지기술산업
-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산업
- 저탄소교통시스템산업
- 토지이용 및 흡수원분야의 탄소배출감축산업

② 지구온난화적응

지구온난화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투자섹터

하부산업

- 물기반시설산업
- 해안기반시설산업
- 지식 및 조기경보시스템산업
- 건축기반시설산업

③ 지구온난화대응

지구온난화 대응은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투자섹터

하부산업

- 재난구조산업
- 재난복구산업

지구온난화산업의 3가지 섹터

* 출처: SAM 그룹

참고 2. 투자섹터별 하부산업 설명

① 지구온난화완화

- 저탄소에너지기술산업(Carbon Light Power Technologies)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 천연가스발전,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포집, 저장에 필요한 기술 또는 공정 등의 산업이 해당합니다.
-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산업(Demand-side Energy Efficiency)
수요자가 선호하는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에너지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 공정을 적용한 단열재, 조명, 설비관리, 난방, 환기, 냉방 등의 산업이 해당합니다.
- 저탄소교통시스템산업(Carbon Light Transportation Solutions)
탄소배출량이 적은 교통체계와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천연가스연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첨단추진시스템, 교통시스템, 경량화, 공기역학기술 등과 관련된 산업이 해당합니다.
- 토지이용 및 흡수원분야의 탄소배출감축산업(Emission Reduction from Land Use and Sinks)
온실가스흡수, 자연생태계의 온실가스 저장능력향상과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바이오매스(Biomass)연소 및 이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정, 장치산업, 산림관리, 산림흡수원, 토지이

용 변경 등과 관련된 산업이 해당합니다.

② 지구온난화적응

- 물기반시설산업(Water Infrastructure)

기후변화에 따라 수로, 수관, 댐, 하수로, 강수량, 증발량, 누수, 지하수와 관련된 수처리의 새로운 변화 여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물기반시설과 관련된 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 해안기반시설산업(Coastal Infrastructure)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평균해수면, 태풍발생, 폭풍우의 빈도 및 강도의 새로운 변화여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항구, 해안선, 독길, 태풍방호시설 등의 해안기반시설과 관련된 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 지식 및 조기경보시스템산업(Knowledge & Warning Systems)

기상 및 기후시스템 또는 기상장비, 무선센서, 지리정보시스템(GIS), Mapping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 기후변화이해, 안내결정, 관리감독을 돕는 서비스, 기타 기상 및 기후에 영향받는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및 지식의 수집, 분석, 배분 등과 관련된 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 건축기반시설산업(Building Infrastructure)

새로운 기후 및 기상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물, 해안선이외의 기타 기반시설과 관련된 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내진설계공법, 폭풍우에 견디는 고강도지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지구온난화대응

- 재난구조산업(Disaster Relief)

자연재해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영리, 비영리조직, 개인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관계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학교, 응급구조차량 및 장비, 렌탈장비, 무선전화기, 임시발전시설 등과 같이 피해를 당한 해단지역 기반시설의 긴급수요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활동 등이 해당합니다.

- 재난복구산업(Reconstruction)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복구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영리, 비영리조직, 개인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관계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기계류, 건축자재, 교통 및 통신서비스, 석유 및 가스서비스, 항만재건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참고 3. 샘(SAM)의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



참고 4. 펀드내 외화표시자산의 구성내역(2008년 12월 31일 현재)

① 지역별 분포

구분	유럽	아메리카	환태평양	현금
비중	52.58%	32.32%	10.96%	4.14%

② 섹터별 분포

구분	완화	적응	대응	현금
비중	77.32%	6.73%	11.81%	4.14%

③ 시가총액 분포

구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현금
비중	27.62%	31.19%	37.05%	4.14%

④ 산업별 분포

구분	산업재	정보기술	소재	유틸리티	현금
비중	42.15%	4.45%	8.87%	40.38%	4.14%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이 해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두자산탁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모두자산탁 표시통화(미국달러화, 유로화 등) 대비 자투자신탁 표시통화인 원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자투자신탁차원에서 환헤지를 합니다(목표헤지비율: 90%±10%). 그러나 펀드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헤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당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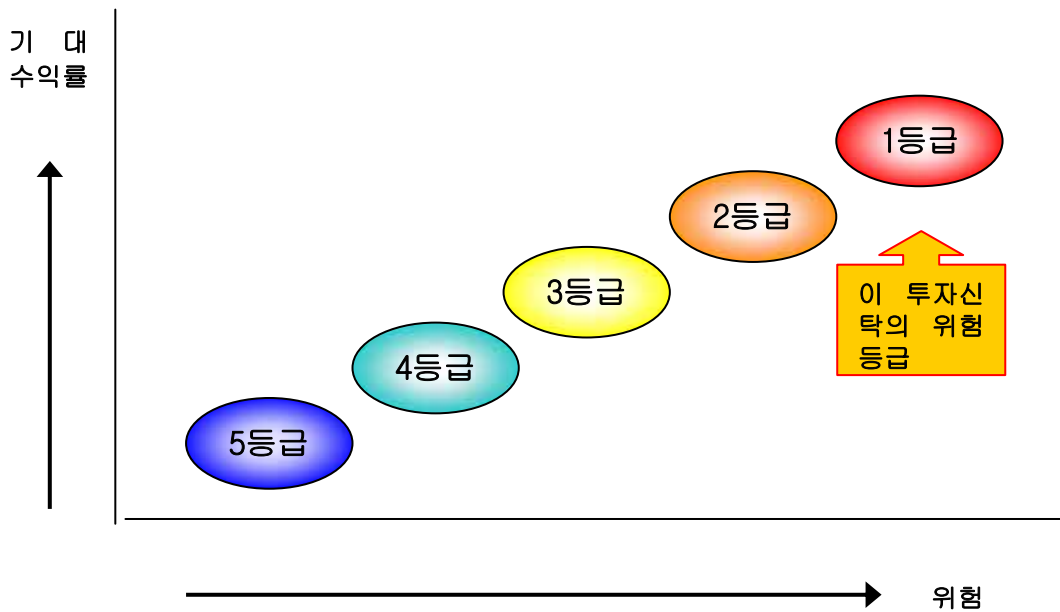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입/환매가 자유로운 일본 펀드에 투자하나, 해외펀드의 특성상 환매절차가 영업일기준으로 D+4~7일정도 소요되고, 시차 및 관계국가의 휴일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 당해 투자신탁의 환매기간은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영업일 기준 8일 후(환매신청일 포함시 9일)가 됩니다.
오퍼레이션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과 달리 시차에 의한 주식시장의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

	과정에서 운용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연기위험	다음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에 있어서 신탁재산 60%이상을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향후 가장 유망하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전세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대신탁투자신탁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원금보존형 제외)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형 및 파생형)
3등급	중간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혼

		합형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 절대수익추구형 투자신탁(주식 매입금의 90% 이상 헤지하는 투자신탁)
4등급	낮은위험	-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원금보존형)
5등급	매우낮은 위험	- MMF

11. 자펀드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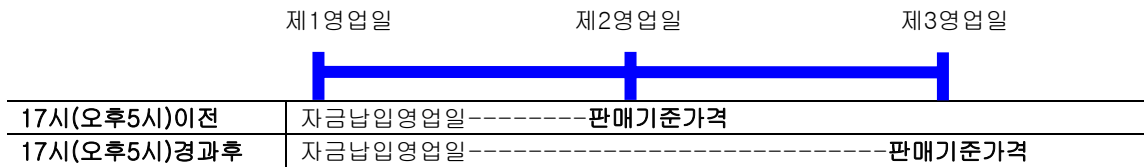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라)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17시(오후5시)이전	환매청구일--환매적용기준가격-----환매대금수령일
17시(오후5시)경과후	환매청구일-----환매적용기준가격-----환매대금수령일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 담 비 율							비고 (지급시기)
	클래스 A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W	클래스 C-F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일 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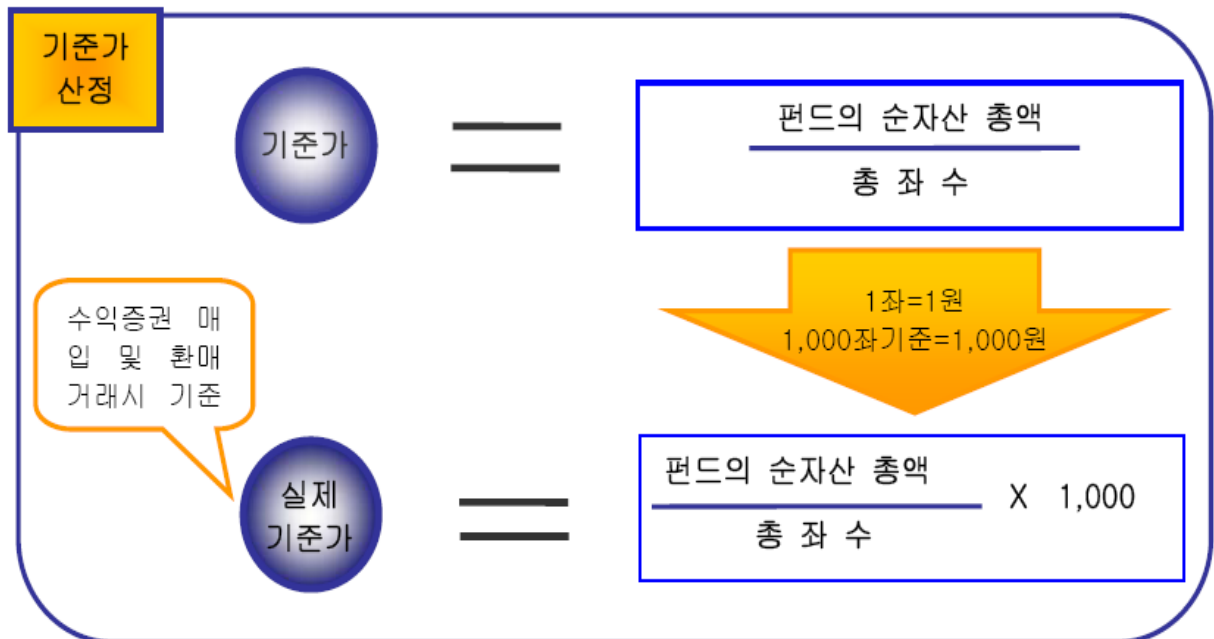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 판매회사· 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1) , 가 , 가 가 가 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가격정보를 기초로 한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3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50%				환매시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C4	Class C-W	Class CF		
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50%			환매시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수수료 현황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3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50%				환매시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C4	Class C-W	Class CF		

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5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3	
집합투자업자	0.9000	0.9000	0.9000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0.8000	1.8000	0.2000	0.1000	
신탁업자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233	0.0139	0.0139	0.0139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1.8033	2.7939	1.1939	1.0939	
총보수·비용비율²⁾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109	2.9018	1.3018	1.2018	
증권 거래비용	0.4374	0.4388	0.4388	0.4388	사유발생시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C4	Class C-W	Class C-F		
집합투자업자	0.9000	0.9000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0.0500	0.0000	0.0300		
신탁업자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233	0.0233	0.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1.0533	1.0033	1.0100		
총보수·비용비율²⁾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612	1.1112	1.1179		
증권 거래비용	0.4388	0.4388	0.2626	사유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외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07.04 ~ 2008.07.03]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07.04 ~ 2008.07.03]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클래스 A	340	859	1,430	3,128
클래스 C1	342	1,079	1,892	4,307
클래스 C2	178	562	986	2,244
클래스 C3	168	530	929	2,115
클래스 C4	164	517	906	2,062
클래스 C-W	159	501	878	1,998
클래스 C-F	142	446	782	1,780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현황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단위 : 연간,%)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3	
집합투자업자	0.9000	0.9000	0.9000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0.8000	1.8000	0.2000	0.1000	
신탁업자	0.0600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200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545	0.0351	0.0351	0.0351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1.8345	2.8151	1.2151	1.1151	
총보수·비용비율 ²⁾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440	2.9220	1.3220	1.2220	
증권 거래비용	0.3602	0.3435	0.3435	0.3435	사유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C4	Class C-W	Class C-F		
집합투자업자	0.9000	0.9000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0.0500	0.0000	0.0300		
신탁업자	0.0600	0.0600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	0.0200	0.0200	0.0200		

기타비용	0.0351	0.0351	0.0351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1.0651	1.0151	1.0451	
총보수·비용비율²⁾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720	1.1220	1.1520	
증권 거래비용	0.3435	0.3435	0.3435	사유발생시

14. 투자자의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	우리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지구온난화주식종류형자1ClassA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반기)	제 1 기	
	(2009.01.03)	(2008.07.03)	
운용자산	4,105,510,584	14,290,925,604	0
증권	4,105,510,584	14,290,925,604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341,453	9,249,174	0
자산총계	4,112,852,037	14,300,174,778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6,036,163	76,226,882	0
부채총계	26,036,163	76,226,882	0
원본	7,923,821,034	16,334,417,872	0
수익조정금	45,220,048	-260,339,230	0
이익잉여금	-3,882,225,208	-1,850,130,746	0
자본총계	4,086,815,874	14,223,947,896	0

지구온난화주식종류형자1ClassC1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반기)	제 1 기	
	(2009.01.03)	(2008.07.03)	
운용자산	3,811,999,552	18,995,865,080	0
증권	3,811,999,552	18,995,865,08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516,498	68,963,396	0
자산총계	3,814,516,050	19,064,828,476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9,557,875	208,713,586	0
부채총계	29,557,875	208,713,586	0
원본	7,454,313,209	21,876,722,390	0
수익조정금	260,462,113	-427,300,466	0
이익잉여금	-3,929,817,147	-2,593,307,034	0
자본총계	3,784,958,175	18,856,114,890	0

지구온난화주식종류형자1ClassA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08.07.04 - 2009.01.03)	(2007.07.04 - 2008.07.03)	
운용수익	-2,809,518,246	-1,591,655,274	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809,518,246	-1,591,655,274	0
기타수익	37,106	13,079,910	0
운용비용	47,595,047	265,035,264	0
관련회사 보수	47,595,047	265,035,264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360,849	6,520,118	0
당기순이익	-2,858,437,036	-1,850,130,746	0
매매회전율	0.00	0	0

지구온난화주식종류형자1ClassC1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08.07.04 - 2009.01.03)	(2007.07.04 - 2008.07.03)	
운용수익	-2,821,521,086	-2,001,825,310	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821,521,086	-2,001,825,310	0

기타수익	25,552	13,130,434	0
운용비용	77,908,981	597,279,894	0
관련회사 보수	77,908,981	597,279,894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165,564	7,332,264	0
당기순이익	-2,900,570,079	-2,593,307,034	0
매매회전율	0.00	0	0

나. 대차대조표

i. 자1(모)

(단위 : 원)

과목	제2기(2009.01.03)		제1기(2008.07.03)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408,657,978		799,553,936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45,180,566		322,807,836			
2. 예치금	200,000,000					
3. 증거금	163,477,412		476,746,100			
대출채권		0		0		0
1. 골혼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6,948,815,204		15,939,860,363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6,948,815,204		15,939,860,363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1,485,547		38,834,328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726,175		119,106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9,759,372		38,715,222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8,368,958,729		16,778,248,627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오피스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5,145,298		134,853,285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25,230,000		95,700,000			
3. 해지미지급금	9,857,951		39,106,285			
4. 수수료미지급금	57,347		47,000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5,145,298		134,853,285		0
자 본						
1. 원 본	14,937,223,254		18,782,803,84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6,603,409,823		-2,139,408,498			
(발행자수 당기 : 14,937,223,254 짜						
전기 : 18,782,803,840 짜						
전전기 : 짜						
(기준가격 당기 : 530.05 원						
전기 : 886.10 원						
전전기 : 원)						
자 본 총 계		8,333,813,431		16,643,395,342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368,958,729		16,778,248,627		0

과목	제2기(2009.01.03)		제1기(2008.07.03)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골혼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4,105,510,584		7,145,462,802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105,510,584		7,145,462,802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7,341,453		4,624,587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7,341,453		4,624,587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4,112,852,037		7,150,087,389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6,036,163		38,113,441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7,309,409		4,604,587			
4. 수수료미지급금	18,726,754		33,508,85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6,036,163		38,113,441		0
자 본						
1. 원 본		7,923,821,034		8,167,208,93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3,837,005,160		-1,055,234,988		
(발행좌수 당기 : 7,923,821,034 좌						
전기 : 8,167,208,936 좌						
전전기 : (좌)						
(기준가격 당기 : 515.76 원						
전기 : 870.80 원						
전전기 : (원)						
자 본 총 계		4,086,815,874		7,111,973,948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112,852,037		7,150,087,389		0

과목	제2기(2009.01.03)		제1기(2008.07.03)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골혼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3,811,999,552		9,497,932,540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3,811,999,552		9,497,932,540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516,498		34,481,698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516,498		34,481,698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814,516,050		9,532,414,238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9,557,875		104,356,793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2,499,169		34,246,752			
4. 수수료미지급금	27,058,706		70,110,041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9,557,875		104,356,793		0
자 본						
1. 원 본		7,454,313,209		10,938,361,195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3,669,355,034		-1,510,303,750		
(발행좌수 당기 : 7,454,313,209 좌 전기 : 10,938,361,195 좌 전전기 :)						
(기준가격 당기 : 507.75 원 전기 : 861.93 원 전전기 :)						
자 본 총 계		3,784,958,175		9,428,057,445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814,516,050		9,532,414,238		0

다. 손익계산서

1) 자1 (모)

(단위 : 원)

과 목	제2기 (2008.07.04-2009.01.03)		제1기 (2007.07.04-2008.07.03)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9,759,195		40,163,570		0
1. 이 자 수 익	19,759,195		40,163,570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010,751,823		9,431,932,978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2,882,310,000		5,157,730,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416,303,295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544,745,118		4,274,202,97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8,661,532,103		11,268,762,248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3,548,860,000		8,078,583,0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3,093,114,321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459,869,000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490		32,764			
8. 기타거래손실	1,559,688,292		3,190,146,484			
운 용 비 용		18,247		74,592		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8,247		74,59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631,039,332		-1,796,740,292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376980329		-0.09565879		

과 목	제 2 기 (2008. 07. 04 - 2009. 01. 03)		제 1 기 (2007. 07. 04 - 2008. 07. 03)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7,106		6,539,955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37,106		6,539,955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2,890,408		526,951,499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2,890,408		526,951,499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832,408,654		1,322,779,136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2,625,602,627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차손실	206,806,027		1,322,779,136			
운 용 비 용		48,955,896		135,777,691		0
1. 운용수수료	24,338,450		67,764,803			
2. 판매수수료	21,634,075		60,235,252			
3. 수탁수수료	1,622,522		4,517,577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360,849		3,260,05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858,437,036		-925,065,373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360739727		-0.11326579		

2) Class C1

(단위 : 원)

과 목	제2기 (2008.07.04-2009.01.03)		제1기 (2007.07.04-2008.07.03)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5,552		6,565,217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25,552		6,565,217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1,696,043		726,929,86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1,696,043		726,929,86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843,217,129		1,727,842,515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2,475,025,889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차손실	368,191,240		1,727,842,515			
운 용 비 용		79,074,545		302,306,079		0
1. 운용수수료	25,404,947		97,382,293			
2. 판매수수료	50,810,422		194,765,618			
3. 수탁수수료	1,693,612		6,492,036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165,564		3,666,13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900,570,079		-1,296,653,517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389112987		-0.11854184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자1(모)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8.07.04 - 2009.01.03	188	165	12	8	50	39	149	79
2007.07.04 - 2008.07.03	0	0	275	270	87	86	188	16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자1 Class A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8.07.04 - 2009.01.03	82	70	7	5	10	7	79	41

2007.07.04 - 2008.07.03	0	0	119	117	38	37	82	71
-------------------------------	---	---	-----	-----	----	----	----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다. 자1 Class C1

[단위: 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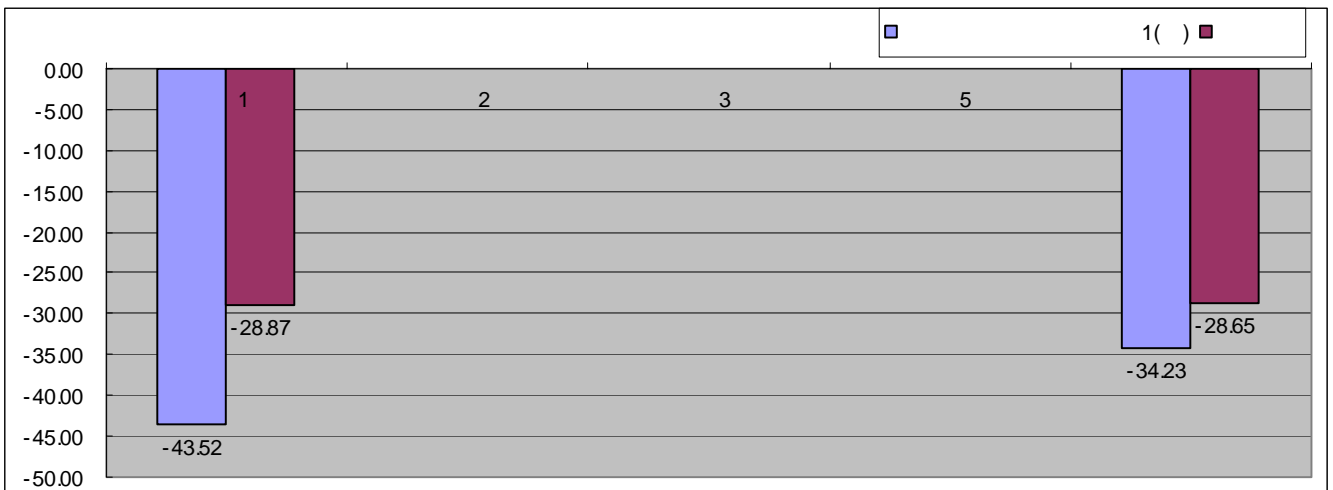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8.07.04 - 2009.01.03	109	93	5	3	40	30	75	38
2007.07.04 - 2008.07.03	0	0	156	153	47	46	109	9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4.01 ~09.03.31			
자 1(모)	-43.52				-34.23
비교지수	-28.87				-28.65

자 1ClassA	-44.59				-35.48
비교지수	-28.87				-28.65
자 1ClassC1	-45.17				-36.17
비교지수	-28.87				-2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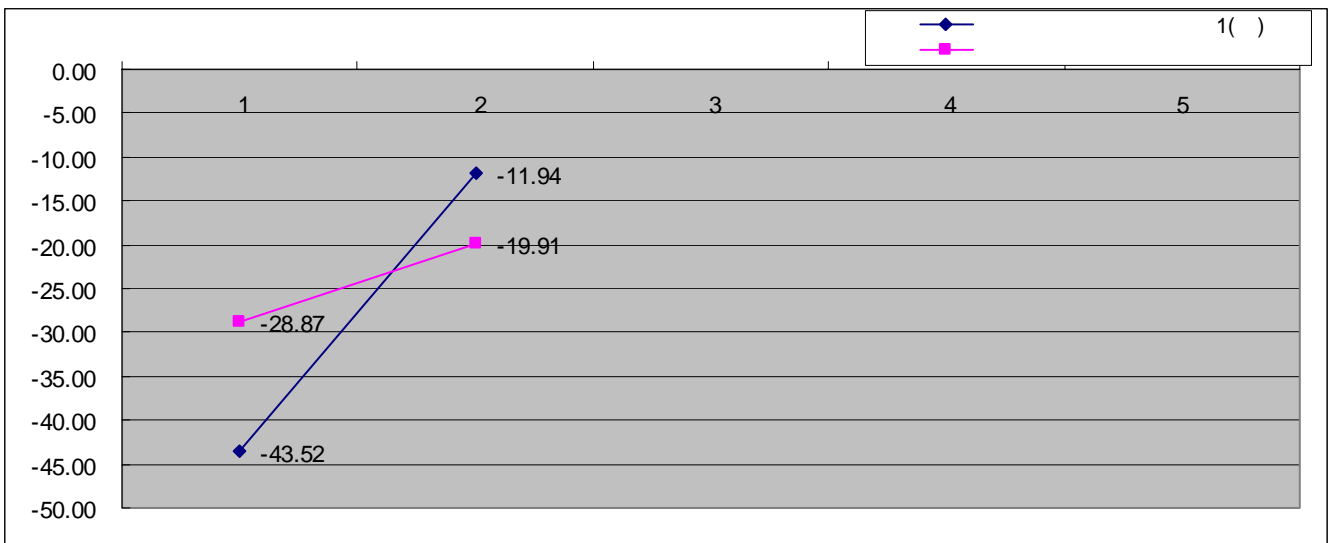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0.9 * [\text{MSCI_World}(\text{EUR})_{t-1}]) + (0.1 * [\text{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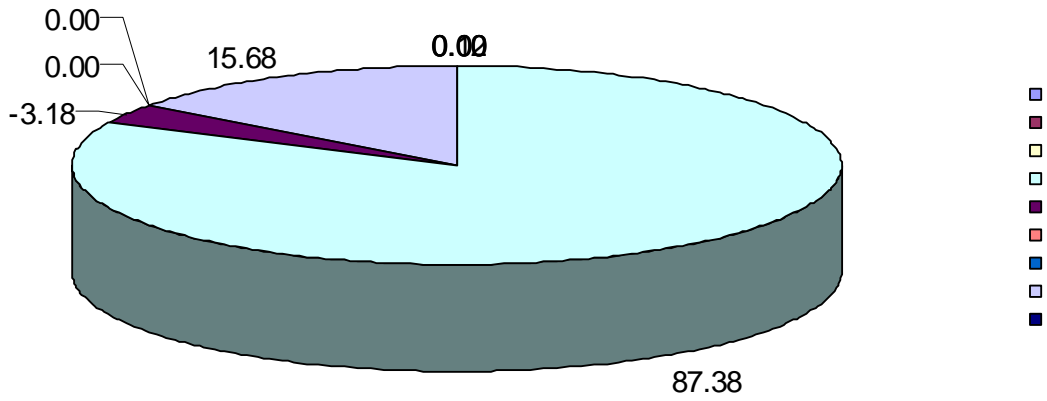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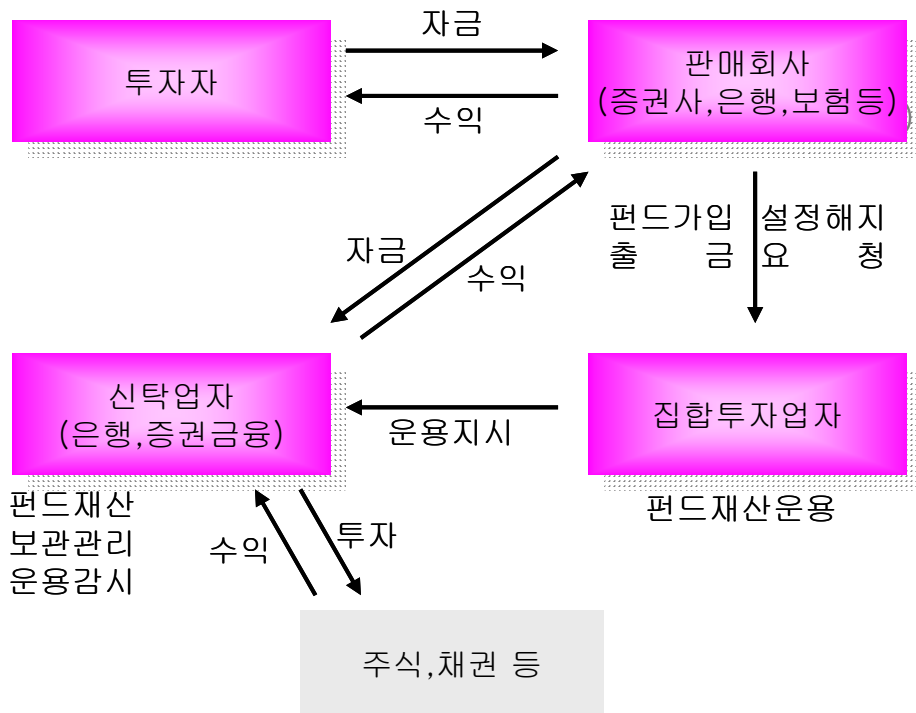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4.01 ~09.03.31	07.07.04 ~08.03.31			
자 1(모)	-43.52	-11.94			
비교지수	-28.87	-19.91			
자 1ClassA	-44.59	-13.06			
비교지수	-28.87	-19.91			
자 1ClassC1	-45.17	-13.70			
비교지수	-28.87	-19.91			

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09.01.03.현재/단위 : 억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 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69	2	0	0	0	0	12	0	84
	(0.00)	(0.00)	(0.00)	(83.03)	(1.95)	(0.00)	(0.00)	(0.00)	(0.00)	(14.90)	(0.12)	(105.00)
EUR	0	0		0	0	-3		0		0	0	-3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3.00)
USD	0	0		0	0	-2		0		0	0	-2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2.00)
합계	0	0	0	69	2	-4	0	0	0	12	0	80
	(0.00)	(0.00)	(0.00)	(87.38)	(2.06)	-(5.23)	(0.00)	(0.00)	(0.00)	(15.68)	(0.12)	(100.00)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대신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9층 (연락처 : 02-769-3246, www.ditm.co.kr)
회사 연혁	1988. 3 대신투자자문(주) 설립 (납입자본금 10억원) 1988. 4 투자자문업 등록(재무부 등록번호 제8호) 1996. 6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1996. 7 대신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1997. 7 투자신탁운용업 허가(주식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7. 7 공사채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9.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경영 인가(재정경제부)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대신증권(주) 100 %

2009.03.31. 기준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계정과목	2008.3.31	2007.3.31	계정과목	07.4.1 ~ ~ 08.3.31	06.4.1 ~ ~ 07.3.31
유동자산	343	368	영업수익	58	59
고정자산	56	41	영업비용	46	55
자산총계	399	409	영업이익	12	4
유동부채	2	4	영업외수익	0	4
고정부채	2	1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4	5	경상이익	12	8
자본금	300	300	당기순이익	9	6
이익잉여금	95	104			
자본총계	399	404			

라. 운용자산 규모 [2009.03.31 현재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525	4,236	3,349	0	314	2,699	0	115	2,458	0	4,334	21,03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당 펀드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 운용지시, 조사분석업무, 단순매매주문업무

②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설립일	1995년 8월 8일

회사주소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Limited AG Josefstrasse 218, CH-8005 Zurich, Switzerland 전화번호:(41)-44-653-1010 팩스:(41)-44-653-1080
------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1588-1111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hana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빌딩 4층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26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it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p>①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p>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p>[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집합투자규약(투자신탁 기본약정서 포함)
2.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
3. 위탁판매계약서
4. 예비투자설명서
5. 간이투자설명서
6.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 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

	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